

## 『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개정조례안』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객관적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설정 필요
- 부과징수에 관한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와 공공하수도 신·증설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현실화(현재 '95년 부과기준 적용)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부과기준 공고
  -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
  - m<sup>3</sup>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
  -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
-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개정
- 하수도법에 의한 가산금 징수 기준

### 4. 참고사항

#### ○ 관련법령

- 하수도법 제24조, 제24조의2, 제24조의3, 제32조, 제38조
- 환경부 훈령 제59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(2002. 1. 14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의 적정성을 기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'95년도 부과기준을 공공하수도 신·증설에 필요한 비용부담 현실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훈령 제59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(2002. 1. 14)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
-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2월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,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, 하수도법에 의한 가산금 징수 기준등 임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